

2018.04.19

「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및 「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

1. 「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등 개정이유

- 아시아-태평양 무역협정(APTA : Asia-Pacific Trade Agreement)은 1976년 한국, 중국, 인도, 스리랑카,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 등 6개국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2017년 1월 제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.
- 협정문 개정 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18일 「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등의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고, 예고기간(18.04.18 ~ 18.05.11)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협정문의 발효일(18.07.01)에 맞춰 관련 법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
2. APTA 제4라운드 개정내용

(1) 양허대상품목 및 양허세율 확대

- 한국, 중국, 인도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 중 약 30%에 대하여 평균 33%의 관세를 인하하고, 스리랑카, 라오스 등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할 예정입니다.

국가	양허품목 수 (특혜품목 수 비중)		MOP(%) (MFN 대비 관세인하율)		
	제3라운드	제4라운드	제3라운드	제4라운드	
한국	1,367	2,797 (28%)	35.7	33.4	
중국	1,697	2,191 (29%)	26.7	33.1	
인도	570	3,142 (29%)	25.5	33.4	
개도국	방글라데시	209	598 (10%)	14.0	21.8
	스리랑카	427	585 (17%)	16.0	22.6
	라오스	-	999 (8.9%)	-	-
총계	4,270	10,312	23.6	28.5	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(2)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

- 제3라운드까지 AP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일하게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었으나, 금번 개정에서 철강, 금속품,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 품목에 대하여,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,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3. 기대효과

- APTA 제4라운드 협상 발효가 이미 발효되어 운영 중인 한-중 FTA 및 한-인도 CEPA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2017년 세율을 기준으로 한국 측은 의류, 비철금속 등 444개 품목의 수입세율이, 중국 측은 철강, TV, 자동차 등 1,222개 품목의 수입세율이 한-중 FTA보다 낮아 APTA를 활용하는 것이 FTA를 활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.
- 한-인도 CEPA에서는 대부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원산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으나 APTA는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단일기준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받기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제22류 음료·주류·식초	
22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제27류 광물성 연료·광물유(鑛物油)와 이들의 증류물, 역청(瀝青)물질, 광물성 왁스	
2707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2708	
2709	
2710	
2711	
2712	
2713	
2714	
2715	
제28류 무기화학품, 귀금속·희토류(稀土類)금속·방사성 원소·동위 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	
2852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제29류 유기화학품	
29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2902	
2903	
2904	
2905	
2906	
2907	
2908	
2909	
2910	
2911	
2912	
2913	
2914	

세인
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2915	
2931	
2932	
2933	
2934	
2935	
2936	
2937	
2938	
2939	
2940	
2941	
2942	
제30류 의료용품	
3002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3006	
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	
3817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	
39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3902	
3903	
3904	
3905	
3906	
3916	
3917	
3918	
3919	
3920	
3921	
3922	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3923	
3924	
3925	
3926	
제40류 고무와 그 제품	
4002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
제64류 신발류·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, 이들의 부분품	
6401	
6402	
6403	
6404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6405	
6406	
제68류 돌·플라스터(plaster)·시멘트·석면·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	
6801	
6802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6803	
제15부 비금속(卑金屬)과 그 제품	
제72류 철강	
7201	
7202	
7203	
7204	
7205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7206	
7218	
7224	
제73류 철강의 제품	
7307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
세인
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7308	
7309	
7310	
7311	
7312	
7313	
7314	
7315	
7316	
7317	
7318	
7319	
7320	
7321	
7322	
7323	
7324	
7325	
7326	
제74류 구리와 그 제품	
7401	
7402	
7403	
7404	
7405	
7406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7407	
7408	
7409	
7410	
7411	
7412	

세인
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7413	
7415	
7418	
7419	
제75류 니켈과 그 제품	
75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7502	
7503	
7504	
7505	
7506	
7507	
7508	
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	
76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7602	
7603	
7604	
7605	
7606	
7607	
7608	
7609	
7610	
7611	
7612	
7613	
7614	
7615	
7616	
제78류 납과 그 제품	
7801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8.04.19

※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

7802	
7804	
7806	
제79류 아연과 그 제품	
7901	
7902	
7903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7904	
7905	
7907	
제80류 주석과 그 제품	
8001	
8002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8003	
8007	
8536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제20부 잡품	
제96류 잡품	
9619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
9620	